대한간학회-GSK 연구기금 규정

개정 2009. 03. 24.
개정 2011. 08. 17.
개정 2013. 10. 08.
개정 2014. 04. 15.
개정 2016. 02. 03.
개정 2018. 02. 08.
개정 2018. 04. 05.
개정 2019. 02. 11.

제 1조 (명칭)

본 기금의 명칭은 대한간학회-GSK 연구기금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GlaxoSmithKline Research Fund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라고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본 기금은 간담도 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본 규정의 목적은 대한간학회-GSK학술논문상(GlaxoSmithKline Research Award of the KASL)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3조 (지원범위)

1) 본 기금은 2016년도부터 매년 3명에게 대한간학회-GSK학술논문상을 지원한다.
2) 대한간학회-GSK학술논문상은 SCI 혹은 SCIE에 등재되어 있는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거나 Clincal Molecular Hepatology (CMH)에 개재한 간·담도에 관한 논문 중 3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하되, 이중 1편은 CMH에 게재한 논문을 선정하며, 1편당 1,000만원씩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에게 지원한다.
3) 3명의 우수논문 수상자 중 최소한 1명은 만 45세 미만의 젊은 연구자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연도에 적합한 만 45세 미만의 젊은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45세 이상 연구자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 4조 (지원대상자의 자격)

대한간학회 정회원으로 동일한 논문으로 다른 학술상을 수상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한다.

제 5조 (구비서류)

대한간학회-GSK학술논문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한 날까지 본 기금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아래 모든 내용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 1개와 제본형식의 원본서류 1부

1) 신청서 및 평의원 추천서 (소정양식)
2) 이력서

3) 연구업적목록
4) 대상논문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 6조 (운영위원회)

1) 대한간학회에 본 기금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한간학회 이사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은 GSK임원이 맡고, 연구기획이사가 간사를 겸임한다.
3) 대한간학회의 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간학회 회칙상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제 7조 (심사위원회)

대한간학회-GSK학술논문상의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한다. 대한간학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에서 8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대한간학회 회칙상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2)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촉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조 (GSK학술논문상 수상자 발표)

대한간학회-GSK학술논문상은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며 이 내용을 대한간학회지(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에 게재한다.

제 9조 (수상자의 의무)

1) 대한간학회-GSK학술논문상 수상자는 2년 이내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대한간학회지(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에 투고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위반하였거나 수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따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대한간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